

# 19. 移住對策施行의 主要基準大幅改善

資料提供：韓國土地開發公社

## I. 요 지

토개공은 종래 개발사업이 발표되는 경우 이주대책을 노린 불법전입 기타 부동산 투기 사례를 향후 전면 속단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주대책 시행의 주요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'93. 1. 1부터 이를 시행기로 하였음

## II. 개선 내용

가. 가옥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 강화 및 계속 거주요건 적용

- 현행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은 개발사업의 발표시점에 해당하는 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 경과된 이후인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그 사업지구내에 거주한 자로 되어 있어 예정지구지정고시일이 경과된 이후 이주대책을 노려 사업지구내로 위장전입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
- 따라서 향후 대상자 선정기준일을 개발사업의 발표시점에 해당하는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현재로 앞당겨서 「사업지구지정고시일 이전부터 동 고시일 이후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여온 자」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음

나. 세입자 선정기준일 강화 및 계속 거주요건 적용

- 가옥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를 사업지역지정고시일 이전부터 동 고시일 이후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온 자로 금회 그 요건을 강화하는 점을 감안, 세입자에 대하여도 「사업지역지정고시일 3월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역내에 계속 거주하여온 자」로 그 대상자 요건을 강화하였음

다. 거주사실 확인에 이용되던 인우보증제도 폐지

- 사업지역내 거주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,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·통·반장 및 5인 이상의 연명에 의한 인우보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어 허위의 인우보증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음.
- 따라서 향후 거주사실에 대한 현행의 「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하였음」.

라. 무주택여부 확인방법 강화

- 사업지역내에 가옥을 소유한 상태에서 취학, 질병,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등으로 사업지역외에서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행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
- 이 경우 무주택여부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과 그 주소지상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고 있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따로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 확인이 불가하였음
-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「무주택 확인은 정부의 주택전산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므로써 대상자 선정의 오류가 없도록 하였음.

마. 개발사업 발표를 전후한 무허가건물 난립현상 계속 불인정 방침

- 종래 개발사업의 발표를 전후하여 주거용 비닐하우스등 무허가건물이 난립하는 현상에 대하여는 「'89. 1. 24부터 이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투기사례는 이를 철저히 배제하여 나가기로 함.」

### Ⅲ. 개선 효과

이주대책 및 세입자대책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금회의 개선으로 종래의 위장전입, 허위의 인우보증 및 이와 관련한 부조리의 발생등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대폭 경감될 것임.

다만, 개선방안 시행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일부 민원의 증대가 예상되기는 하나 이는 향후 본건 개선방안의 일관된 시행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을 것임.